



제3보험의 이해 1: 제3보험의 개요

오병국 연구원

-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보험을 의미함.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어느 한 보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보험임.
 - 질병보장상품의 경우 사람을 보험대상으로 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장, 각종 질병치료비의 실손보상 등으로 인해 손해보험으로도 볼 수 있음.
- 또한,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경우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질병보험·장기간병보험으로 구분됨.
 -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함.
 -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원·수술·통원 등을 보장함.
 - 장기간병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함.
-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간주됨.
 - 제3보험은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참고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손해보험협회,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양 협회 중 한 곳을 택해 등록을 해야 가능함.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업의 겸영이 가능하며, 각 보험의 특징에 따른 분류는 <표 1>과 같음.

- 제3보험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이로 인한 간병상태를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함.
 -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가 보험사고임.
-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방법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함.
 - 원칙상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방법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나,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상 실손보상이 원칙임.
- 제3보험의 경우 실손보장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이익을 인정함.
 -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표 1>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구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보험사고	생존 또는 사망	재산상의 손해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피보험이익	없음	존재	없음
중복보험(보험가액 초과)	없음	존재	실손보상급부에 존재
보상방법	정액	실손	정액, 실손
피보험자(보험대상액)	보험사고의 대상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기간	장기	단기	장기

자료: 생명보험협회(2011),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